

## 에스크로 계좌의 폐지 신청 및 신고서

신청자 이름: \_\_\_\_\_ 전화번호 \_\_\_\_\_

이메일: \_\_\_\_\_

신청자 우편주소: \_\_\_\_\_

신청자 유형: (한 항목을 선택 하십시오)      •건물주/세주자      •관리회사      •세입자      •채권자

REAP 건물 주소: \_\_\_\_\_ REAP 사건번호. \_\_\_\_\_

\_\_\_\_\_  
\_\_\_\_\_

신청유형 (해당되는 모든 항목을 기입하십시오)

청구 금액

• 향후 수리      • 실행된 수리      \$ \_\_\_\_\_  
(수리)

• 필수 서비스 (예: 전기수도, 쓰레기 수거 서비스)      \$ \_\_\_\_\_  
(필수 서비스)

• 세입자 이주비용      \$ \_\_\_\_\_  
(세입자 이주비용)

• 법정판결 이행      \$ \_\_\_\_\_  
(법정판결)

• 기타 (설명) \_\_\_\_\_      \$ \_\_\_\_\_  
(기타 비용)

총 청구금액      \$ \_\_\_\_\_

본인은 기 건물에 해당되는 사안의 신청자 자신임을 선언하며 LAMC에 따라 예탁자본을 양도해 줄것을 신념을 가지고 신청합니다. 162.07 및 REAP 규제 1200.13.

\_\_\_\_\_  
이름 (활자체)

\_\_\_\_\_  
서명

\_\_\_\_\_  
날짜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가해 주십시오; 이면에 명시된 필요서류 및 추천서류의 목록을 참고해 주십시오;  
신청서를 아래 주소로 제출해 주십시오:

Los Angeles Housing and Community Investment Department Attn: REAP Section PO Box 17460 Los Angeles CA 90017

전화번호: (844) 864-REAP      팩스: (213) 808-8810

미국장애인복지법의 2장의 대상기관인 로스앤젤레스 시는 장애로 인한 차별을 하지 않으며 시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 활동사항에 대한 평등한 이용을 보장키 위해 요청이 있을 경우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합리적인 편의가 필요하십니까? 예/아니오 \_\_\_\_\_

“예”라고 대답하신 경우 설명해 주십시오: \_\_\_\_\_

로스엔젤레스 주택 및 거주지 투자부는 REAP 에스스로 계좌의 자금이 반환되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온 설명은 정보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었습니다. HCID는 이러한 정보의 완전성이나 유용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에스스로 폐지  
신청절차

LAMC 162.07 및 REAP 규제 1200.13에 따라 건물이 임대 에스스로 계좌 프로그램(REAP)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동안 건물주, 세입자, 집행기관, 그리고/혹은 채권자는 에스스로 계좌 자금의 반환을 위하여 제너럴 매니저에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너럴 매니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자금의 반환을 허락 할 수 있습니다.

1 위반사항이나 결격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향후 수리 (여기서 건물을 REAP의 관리하에 놓이게 한 위반 사항이나 결격 사항에 국한되지 않음)

신청자는 수리를 위하여 자금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 세입자는 자신들의 유닛에 영향을 주는 건물의 공동구역의 결격사항을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금의 반환이 허락되면 수리에 소요되는 금액은 하청업자에게 직접 송금됩니다. 반환 금액의 액수가 천불(\$1,000)이 넘는다면 HCID는 수리가 만족스럽게 완수 될 때 까지 허가 금액의 50%를 가지고 있을 것 입니다. 잔여 금액을 영수하기 위하여 신청자는 수리가 완료되었다는 증거를 HCID에 제시하고 통보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증명서류를 제출 할 것을 권고합니다 (예: 수리 견적서, 청구서, 하청업자 제안서 그리고/혹은 입찰). 세입자가 요구하는 수리의 소요금액이 \$500이 넘는다면 신청자는 유자격 하청업자의 견적서와 영수증을 같이 첨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능하다면 견적서와 영수증에는 노동, 재료, 허가서 비용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2 위반사항이나 결격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향후 수리 (여기서 건물을 REAP의 관리하에 놓이게 한 위반 사항이나 결격 사항에 국한되지 않음)

수리비용을 자비로 우선 지불 한 신청자는 비용상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증명서류를 제출 할 것을 권고합니다 (예: 영수증, 청구서, 취소된 수표 등). 세입자가 요구하는 수리의 소요금액이 \$500이 넘는다면 신청자는 유자격 하청업자의 견적서와 영수증을 같이 첨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능하다면 견적서와 영수증에는 노동, 재료, 허가서 비용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3 상하수도 및 전기, 쓰레기 수거서비스, 보안, 해충 통제 서비스, 그리고 관리비용 등과 같은 건물유지, 공과금 계산서, 청구서, 지급 증명서류 등과 같은 보완서류를 신청자가 신청서와 같이 제출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4 세입자 이주 다른 건물이나 유닛으로 이주하기를 원하는 세입자는 에스스로 자금의 반환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중 건물주가 세입자의 건물 혹은 유닛에 해당되는 모든 경고사항을 처리하였다는 것을 집행기관에서 확인하고 승인하면 제너럴 매니저가 에스스로 자금의 반환허가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반환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액수는 자신의 유닛의 에스스로 계좌에 있는 금액의 액수로 제한됩니다.

신청서와 함께 증명서류를 제출 할 것을 권고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 목록, 임대 계약서, 이사비용 등

이주로 인한 자금의 반환 신청이 승인을 받는다면 세입자는 이주비용을 받은 후 60일 내에 이사 하여야 합니다. 세입자는

HCID의 본부서에 와서 이주비용을 받아가라는 통보를 받을 것 입니다.

5 법정에서 명령하였거나 LAMC Section 162.09.C에 의거하여 판결한 내용을 따라야 하는 경우 반환금액은 에스스로 계좌에 있는 금액의 액수로 제한됩니다 (혹은 에스스로 계좌에 관한 세입자의 지분)

신청서와 함께 증명서류를 제출 할 것을 권고합니다. 예: 법정 명령, 판결의 시행 (execution of judgment)

심의관의 판결을 돕기위하여 명확하고 명료한 방법으로 정리되어 있고 읽을 수 있는 (legible) 증명서류를 제출 할 것을 권고합니다.

에스크로 계좌의 자금반환과 관련된 제너럴 매니저의 심의

신청인, 세입자 그리고/혹은 이해관계자는 심의가 실시되는 날로 부터 최소한 15일 전에 심의 날짜, 장소, 시간 등의 정보를 포함한 심의관련 통지를 받아볼 것입니다.

여기서 심의관은 에스크로 계좌 자금의 반환에 관한 결정을 내립니다.

자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신청자는 본 심의에 출두하여서 질문에 답변하고 혹은 자금 반환에 이의가 제시된다면 이에 대한 반박 의견을 낼 것을 권고합니다.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심의관은 신청자에게 추가 증명이나 서류를 제출 할 것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에스크로 계좌의 자금반환과 관련된 제너럴 매니저의 결정에 대한  
항소

제너럴 매니저의 심의가 있는 후 근무일을 기준으로 10일 내에 자금반환의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제너럴 매니저의 심의에서 내린 결정에 의해서 권리의 침해를 당한 당사자는 본 결정에 대한 항소를 할 수 있으며 LAMC Sec

162.07.B.3에 의거하여 통보가 보내진 후 달력일을 기준으로 10일 내에 임대조정위원회(Rent Adjustment Commission)를 통하여 항소 할 수 있습니다.

자금의  
반환

제너럴 매니저의 결정에 항소할 수 있는 10일의 기간동안에 아무런 항소를 받아보지 않는다면 승인된 자금의 반환을 위한 절차가 시작 됩니다. 기한 내 항소가 들어온 경우 자금의 반환은 항소의 결과를 받아 볼 때 까지 지연됩니다.